

[서식 예]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
피 고 △△시 △△구청장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담장철거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2000. O. O. 원고에 대하여 한 OO시 OO구 OO동 OO 지상의 담 장등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한다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19○○년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였는데, 그 서쪽에 접한 소외 정□□ 소유의 같은 동 ○○의 대지(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)의 일부도 위 주택의 부지로서 함께 점유 사용하였고, 그 둘레에는 담장과 쪽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, 원고의 대지 남쪽에 접한 같은 동 ○○의 ○○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조□□도 원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 사용하였습니다.
- 2. 원고는 19○○. ○. ○.경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, 지상 2층의 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, 그 경계선으로부터 0.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각 표시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에 기하여 위



주택을 건축하였으며, 그 후 위 조□□도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1층, 지 상 2층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도로로 하여 건축하가를 받고 이에 기하여 건축하였습니다.

- 3. 원고와 위 정□□는 동쪽에 위치한 같은 동 ○○의 ○와 같은 동 ○○의 ○○ 대지 사이의 현황도로에 접하여 대문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하였고, 위 정□□의 대지 남쪽에 접한 같은 동 ○○의 ○○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조□□도 동쪽의 다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여 왔는데, 위 소외인들이 각기 그 대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현황도로의 대지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위 현황도로가 다세대주택의 건축시 요구되는 도로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19○○년경 피고에게 원고가 도로인 이 사건 토지 상에 담장과 가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며, 이에 피고는 19○○. ○. ○. 의 담장이 약 21년 전에 설치된 것이고 가설물은 지하실 출입구의차면용 시설로서 단속 제외대상이라고 회시하였습니다.
- 4. 그런데, 위 소외인들이 피고에게 위와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, 피고는 19○ ○. ○. ○. 원고에 대하여 위 담장 등이 도로인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,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담장 등을 14일 이내에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고, 원고가 그때까지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할 것임을 계고하는 처분(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)을 하고,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습니다.
- 5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피고처분의 위법성

피고는, 이 사건 토지가 도로용도로 분할되었고, 그후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11호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3m의 도로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인정하고 그 경계선에서 0.2m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시장, 구청장 등이 지정한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지상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인근주민을 방해하고 있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, 이 사건 토지가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를 소유자의 승낙하에 20여년간 대지의 일부로서 사용하여 왔고 원고와 인근 주민들이 다른 곳에 개설된 사실상의 도로를 이용하여 왔으며 피고가 이



를 도로로 지정한 바가 없으므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, 이 사건 대집행계고서상 그 목적물의 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원고의 대지로 기재되어 집행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

나. 관계법령

구 건축법(1991. 5. 31. 법률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15호에서 도로라 함 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(지형적 조건 또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막다른 도로의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)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 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, 그 가.목은 도시 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하 고시 가 된 것을, 그 나.목은 건축허가시 시장(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각 들고 있고, 제30조는 건 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. 다만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며, 또한 같은 법 시행령(1992. 5. 30.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) 제64조 제1 항은 법 제2조 제1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로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 며, 도로를 지정한 때에는 그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를 기재한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도로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 제62조 제1항 은 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막다른 도로의 폭은 도로의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인 경우 3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6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증여계약서

1. 갑 제2호증

인증서



1. 갑 제3호증

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통1. 소장부본1통1. 납 부 서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ㅇㅇㅇ (인)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와 상대방수 만큼 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○○○원(□□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○○○원(□□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· 항소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0조) ·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(행정소송법 8조, 민사소송법 396조)		

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과 국 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